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의 보험계약자인 본인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금의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정의]

- ① “보험계약대출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대출한도**, 방법에 따라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보험계약대출금”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말합니다.
- ③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본 건 금전차용 계약의 기본이 되는 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말하며, 보험계약대출계약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 [제휴기관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 ① 보험계약자가 제휴기관의 전산기기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대출금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 약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② 제①항의 경우에 전산기기 이용료, 제휴기관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출금과 소정의 전산기기 이용료, 제휴기관 수수료 등을 합한 금액을 총 대출금액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대출기간 및 원리금상환]

- ① **보험계약대출계약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 계약의 기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계약별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상환기간 내에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대출대상 보험계약의 만기와 대출만기가 달리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출만기 1년 이내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됩니다.
- ④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또는 해지환급금 최고시점” 도래 전에 대출한도가 조정되거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자의 납입 및 방법]

- ①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보험계약대출 계약별로 정한 이자율로 하며, 보험계약대출 기간 중도에 회사의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변동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② **보험계약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에 납부하며, 이자 납입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은 보험계약대출금에 **합산(月1회)**됩니다.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 이자가 합산된 보험계약대출금에 의해 부과됩니다.
- ③ 이자의 납입방법은 보험계약대출계약에 의해서 회사와 계약자간에 정한 방법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이자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에는 이자납입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이체 이체일을 맞추기 위하여 이자를 수납 또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자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자납입은 그 이후 최초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 ⑥ 이자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에 이자의 납입방법 및 납입일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일 보험계약자의 다수의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에서 다수의 보험계약대출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회사는 이자납입일과 자동이체 계좌를 보험계약자별로 통합 청구하여 수납 또는 인출합니다.
- ⑦ 보험계약자별로 통합 청구하여 수납 또는 인출되는 경우에 해당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금액이 통합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인출되지 않은 경우, 계좌의 잔고금액이 건별로 청구했을 경우를 가정한 금액 이상이라 하더라도 통합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인출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부담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⑧ 보험계약자별 보험계약대출금액의 합이 회사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입 하셔야 할 이자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원금의 합계액을 청구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⑨ 이자납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지연이자, 보험계약대출계약 및 보험계약대출대상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⑩ 이자납입 사전안내, 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제반안내(안내장, SMS, e-mail 등)는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⑪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이자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및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사로부터 독촉이나 통지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변제 이행이 없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대출계약 및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보험계약대출원리금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 및 각종 제세금의 합계액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에 도달한 때(해지환급금의 감소 사유 등)**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보험금 및 제지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때**
3. **회사의 동의없이 위 지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보험계약자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파산, 부도처분, 화의개시, 정리절차 개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국제채납 또는 임금체불 등 회사의 보험계약대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5. **201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이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6조 [지급 시 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제지금금(환급금, 보험금, 분할보험금, 연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할 제지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험계약의 소멸]

상환기일 전에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멸일로서 상환기일에 도달한 것으로 하여 회사가 지급할 금액(보험금 및 제지금)에서 대출이자 및 원금의 순으로 공제합니다.

제8조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회사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계약자에게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주소·연락처 변경의 통지]

보험계약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만약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시 통지하지 않거나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10조 [우선상환]

보험계약자는 대출원리금의 우선상환을 위하여 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계약의 보험금 및 제 지금금 중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질권설정을 본 중서로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 동질 권설정은 종료됩니다.

제11조 [부대비용]

- ① **보험계약대출에 소요되는 소요세 및 기타 비용은 보험계약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합니다.**
- ②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2조 [준용규칙]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삼성화재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3조 [약관변경]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 청구에 1개월 동안 게시하거나 통지에 의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 안에 서면에 의한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 및 대출의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